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
	보도	배포 시	배포	2021.6.15.(화)

책임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담당자	류성재 사무관(02-2100-2652) 유은지 사무관(02-2100-2653)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	현지은 사무관(02-2100-2668)

제목 : 기업공개(IPO)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

◆ '21.6.15일, 국무회의에서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개정안 의결

- 기업공개(IPO)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, 클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(15억원→30억원),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

* 「자본시장법(’20.12월 개정)」 위임사항 및 최근 발표대책 규정화

I | 주요 개정내용

1. IPO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

- 작년 12월,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‘균등배정’*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,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.
 - *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%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(비례방식)
- 그러나,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,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.
 -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으며,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,
 -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.

□ 이를 해소하기 위해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.

①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.

* 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

-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*이 이루어 집니다.

* 예)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→ 먼저 접수된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 배정

②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·활용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.

*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 중

⇒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□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*되는 가운데, 제도의 운영절차를 탄력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.

*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% 의무배정

○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%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,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* 예) IPO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%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→ 잔여물량 7%(=20%-13%)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

2.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('20.6월 발표) 후속조치

□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(주식+채권)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.

○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(연간 15억원)를 유지하되,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*되도록 하여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됩니다.

* 예) 연초에 15억원 발행후 상반기에 5억원 상환 → 하반기에 5억원 추가 발행가능

-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(現: 매 회계연도 말)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(現: 1년)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.
- 한편, **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**은 원칙적으로 모두 **프로젝트 투자***가 가능하도록 최근 ‘금융투자업규정’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.

* 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

- 그간 문화산업, 신기술 개발,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·보험업, 부동산업,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‘네거티브 규제’로 전환됩니다.

⇒ 혁신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가 제고되고,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.

3.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이하, 종투사)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

- 최근 「자본시장법(20.12월)」 개정으로 종투사가 50%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었고,
 -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ⁱ⁾와 신용공여 한도ⁱⁱ⁾를 금번 시행령 개정시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.
 - i) 현지 자법인(子法人)뿐만 아니라, 그 현지법인이 50% 이상 소유한 **현지 손자법인(孫子法人)**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합니다.
 - ii) 현지법인 ‘전체’에 대해서는 **종투사 자기자본의 40%**, ‘개별’ 법인에 대해서는 **자기자본의 10%**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.
- ⇒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.

II | 향후 일정

- 금번 ‘자본시장법 시행령’ 개정안은 ‘21.6.30일부터 시행됩니다.
 - 다만,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(‘21.6.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)할 계획입니다.

		본 자료를 인용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	
-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현 행	개 정 안
<p>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</p> <p>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8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의2.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·매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</u></p> <p><u>가.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청약자의 중복청약(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하며,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 따른 청약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</u></p> <p><u>나. 청약자의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(최초로 청약을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행위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7조의5(신용공여의 범위 등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7조의5(신용공여의 범위 등)</p> <p>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”이란 <u>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(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</u></p> <p>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 따라 <u>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용공여액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.</u></p> <p>1. <u>개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: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</u></p> <p>2. <u>전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: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이하의 금액</u></p>
<p>제118조의6(등록유지요건의 완화)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.</p> <p>1.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: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</p>	<p>제118조의6(등록유지요건의 완화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.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	<p>----- ----- 월말을 ----- <u>월말을</u> ----- ----- <u>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</u> -----.</p>
<p>제118조의15(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)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	<p>제118조의15(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1.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<u>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</u> <후단 신설></p>	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모집가액(해당 모집가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)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</u> ----- . 이 경우 <u>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.</u></p>
<p>2.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<u>각각의 합계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</u> <후단 신설></p>	<p>2. ----- ----- ----- <u>권유(해당 권유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)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</u> ----- . 이 경우 <u>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6조의9(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)</p> <p>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76조의9(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u></p> <p>가. <u>주식의 모집·매출 규모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금납입능력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비추어 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</u></p> <p>나. 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<u>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 가목의 비율 미만으로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을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할 것</u></p> <p>다. <u>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이 이 호 나목에 따라 표시된 배정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할 것</u></p>